THE SHARP

더샵 송도그란테르 G5-3블록 입주자모집공고

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

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

※ 단지 주요정보 (분양문의 1600-0255)

주택유형	해당지역		규제지역 여부
민영	인천광역시 가주지	서울특별시, 경기도 가주지	비규제지역
재당첨제한	전매제한	거주의무기간	분양가상한제	주택형
없음	6개월	3년	미적용	단기형 / 대규모 택지개발지구

※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4조3항2호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별 공급세대수의 50%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, 나머지 50%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.
다만,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외

구분	입주자모집공고일	특별공급 접수일	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	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	당첨자발표일	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6.05.07.(목)	2026.05.19.(화)	2026.05.20.(수)	2026.05.21.(목)	2026.06.02.(화)	2026.06.03.(수) ~ 2026.06.07.(일)	2026.06.13.(토) ~ 2026.06.16.(화)
방법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인터넷 청약(09:00 ~ 17:30) • (한국청약) 사업주체 건설사별				• 사업주체 방문 • 인천광역 센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(송도동 37-2)	

1 공통 유의사항

■ 한국청약금융원 청약홈 클릭하는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이용안내 및 「주택처]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, 고객 상담 전화에서 청약자 개인이 다음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청약자격 검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및 계약 시 부적격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한국청약금융원 고객센터(1600-0456)를 통하여 청약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4조3항2호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별 공급세대수의 50%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, 나머지 50%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.

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 1순위	일반공급 2순위	당첨자발표	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6.05.19.(화)	2026.05.20.(수)	2026.05.21.(목)	2026.06.02.(화)	2026.06.03.(수) ~ 2026.06.07.(일)	2026.06.13.(토) ~ 2026.06.16.(화)
방법	•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 • (한정일) 사업주체 건설사별				• 사업주체 방문 • 인천광역 센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(송도동 37-2)		

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, 범용 인증서, 은행 인증서, 증권 인증서, 카드 인증서, 핸드폰 인증서) 발급 등은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또는 각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자 중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순번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.

■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청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 : 청약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주택 소유 여부 확인

■ 세대주 확인 대상 : 청약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세대주 변경 여부 확인

■ 청약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및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청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공급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5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일정기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